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43호 2022. 1. 3.(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예천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위생업소, 위생단체, 음식문화 개선사업 용어 정의

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3조 ~ 제4조)

- 지원대상 : 예천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지원사업 : 시설환경 개선, (홍보)물품 지원,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육성·지원, 식중독 예방 지원, 선진외식문화 체험 지원 등에 관한 사업

다. 지도·감독 및 준용(안 제5조~ 제6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단체에 사업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름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pitch12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3) 팩스 : 054-650-67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전화 : 054-650-61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홍보물품 포함) 지원사업
3.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등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